

경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운영내규

경운대학교 임상병리학과

목 차

제 1 장 총 칙	4
제 2 장 학사운영	5
제1절 수업연한	5
제2절 편입학 및 재입학	5
제3절 휴학, 복학, 자퇴 및 제적	5
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	6
제 3 장 교육과정 운영	7
제1절 교육과정 및 이수단위	7
제2절 교육과정 이수	7
제3절 수업 및 성적평가	8
제4절 출결 및 휴·보강	9
제5절 수료 및 졸업	10
제 4 장 학생	12
제 5 장 교수 및 행정	13
제1절 직제	13
제2절 교원담당시수	14
제3절 연구비, 연수 및 연구활동	14
제 6 장 실습운영	16
제1절 실습운영 및 임상실습시간	16
제2절 실험실습비	16

제3절 출석 및 처벌규정	17
제4절 임상실습지도 및 실습평가	18
제5절 기타	18
제 7 장 장학	21
제 8 장 시설관리	23
제1절 강의실 운영 및 관리	23
제2절 실습실 운영 및 관리	25
제 9 장 위원회	26
제1절 총 칙	26
제2절 임상병리학과운영위원회	26
제3절 교육과정위원회	27
제4절 졸업종합시험관리위원회	27
제 10 장 임상병리학과발전위원회	29
제1절 총칙	29
제2절 회원 및 임원	29
제3절 회칙	30
제4절 재정 및 기금	30

3 장 교육과정 운영

제1절 교육과정 및 이수단위

제1조(교육과정 심의)

- ① 임상병리학과의 교육과정은 임상병리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인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적절성 검토를 통한 개정안을 심의한다.
- 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로 정한다.

제2조(교육과정 구성)

- ① 교육과정은 교과와 비교과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교양과목,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교육과정 운영)

- ① 임상병리학과는 임상병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·평가함으로써 임상 병리 교육발전에 기여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.
- ②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임상병리학과는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제4조(교육과정 이수)

- ① 임상병리학과 재학생, 복학생 및 편입생은 임상병리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5조(이수단위)

- ① 각 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.

제2절 교육과정 이수

제6조(교양교육과정)

- ① 기초교육, 교양교육, 소양교육을 합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임상병리학과는 핵심교양을 필수교양, 배분교양을 선택교양으로 편성하고 있다.
- ③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제7조(전공교육과정)

- ① 전공과목은 전공기초, 전공필수, 디자인씽킹 및 전공선택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은 학칙에 따른다.
- ② 임상병리학과는 한국임상병리교육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 1. 전공기초를 제외한 전공교과목은 최소 70학점 이상 이수한다.

제3절 수업 및 성적평가

제8조(수업) 매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의한다.

- ① 수업은 이론수업, 실습실수업, 임상실습 및 자율실습 등으로 운영한다.
- ② 3학년은 하계, 동계 방학 중 임상실습을 실시하고 4학년 1학기에 학점을 부여받는다.

제9조(성적평가)

- ① 성적평가는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고, 교과목별 성적평가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임상실습 교과목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기타 성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제10조(추가시험)

- ① 질병, 취업면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.
-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달리하여 실시한다.
- ③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추가시험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으나, 그 성적은 B등급(84점)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당일 시험시간 지각자는 시험시간 내 시험응시 학생 중 퇴실자가 없는 경우 시험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에 임할 수 있으며, 시험시간은 남은 시험시간으로 한다. 단, 시험시간 지나 도착한 지각자는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, 당일 추가시험을 실시하며, 성적은 B등급(84점)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1조 (시험실격 및 처리)

- ① 시험감독 교수는 부정행위자로 판정되면 즉각 퇴장시키고 부정행위한 교과목의 시험성적은 0점 처리한다.

제12조 (평가관리) 성적평가 문제지 및 채점내용은 1년 보관한다.

제13조(학사경고 및 학사제적)

- ①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.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, 그 사실을 학생, 학부모(보호자)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한다.
- ②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는 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자에 한해 15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나, CTL 지원프로그램 이수 학생은 18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.
- ③ 기타 성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제14조(학점인정)

- ① 학칙 제 60조에 의거 재학 중 해외어학연수, 봉사활동 등으로 취득한 특별학점에 대해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(예, 임상병리학전공연수, 글로벌해외어학연수, LINC어학연수, 영어캠프 등)

- ② 학칙 제 60조에 의거 우리 대학과 상호 학점인정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협약에 따라 인정한다. 단, 1학년 2학기부터 학점교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특별강좌로 이수한 학점은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전공 교과목 성적 중 F등급이 있는 자는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의 재수강 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.<개정 2017. 03. 01. >
- ⑤ 재수강은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, 졸업기준의 필요에 의한 재수강은 4학년 2학기에도 할 수 있다.
- ⑥ 기타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 기타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제4절 출결 및 휴·보강

제15조(출결관리)

- ①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결석한자의 교과목은 F로 처리한다.
- ② 교원은 매 시간 수업 시작 시 학생 사진이 포함된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호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출석, 결석, 지각 등을 확인 및 기록하여야 한다.
- ③ 기타 출결에 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제16조(공인출석)

- ① 공인출석 사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해당 학생은 학과의 승인 후에 공인 출석 인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득할 수 있다.
- ② 공인출석기간은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(단, 아래 9호는 예외)

호	인정사유	인정기간	구비서류
1	본인 결혼	5일	공인출석인정원, 가족관계 확인서류
2	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 사망	5일	공인출석인정원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 확인서류
3	형제자매, 배우자의 형제자매, 조부모, 배우자의 조부모, 직계비속 사망	3일	공인출석인정원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 확인서류
4	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	최대 2주, 장애인(4주)	공인출석인정원,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
4-2	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	월1일, 학기당 4일 이내 (계절학기중에는 1일이내)	공인출석인정원,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5	징병검사·징소집	해당기간	공인출석인정원, 관련 증빙서류

6	국내·외 각종대회(학술대회, 체육대회 등) 또는 회의에 학교대표 또는 운동부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	해당기간	공인출석인정원, 관련 증빙서류
7	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	해당기간	공인출석인정원, 관련 증비서류
8	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	해당기간	공인출석인정원
9	졸업예정자로서 구직활동(조기취업)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	해당기간	공인출석인정원, 관련증빙서류
10	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	해당기간	공인출석인정원

제17조(장기결석)

- ① 일일 출결현황을 통한 장기결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 통보하고 관련 상담 진행을 요청하고 담당교원은 즉시 학생 상담내역을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② 장기결석자 상담 결과, 위기 학생이나 부적응자의 경우 상담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.

제18조(휴·보강)

- ① 법정공휴일 및 학사력(대학지정)을 제외한 휴강 시 사전(7일전)에 보강계획서를 첨부하여 학과장, 학장, 교무처장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휴보강 승인 이후 수강자에게 즉시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스마트출결시스템에 자동 반영한다.
- ③ 담당교원은 휴강과 보강일정을 사전에 수강생에게 공지하고, 보강계획서에 명시한 일시에 따라서 보강을 실시한 후 반드시 보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(부)장 승인 후 해당부서에 제출한다.

제5절 수료 및 졸업

제19조(수료)

-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졸업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기타 수료에 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제20조(졸업학점)

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제21조(졸업시험)

- ① 졸업시험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시험자격을 부여한다.
- ② 졸업시험은 졸업종합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 교과목 편성, 시행시

기, 합격자 사정 등을 실시한다.

- ③ 졸업종합시험은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.
졸업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전체 평균 60점 이상, 교과목 별 40점 이상 취득하여야만 합격으로 한다.
- ④ 3회의 국가시험대비 교내모의고사에서 국가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2회 이상 만족할 경우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(교외모의 고사는 제외함).
- ⑤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졸업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. 임상병리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⑥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시험의 기회를 준다.
- ⑦ 기타 졸업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제22조(졸업)

- ① 졸업예정자는 임상병리학과에서 정하는 하단의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사정 심의를 통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 1. 수업 4년(8학기) 이상
 2. 졸업학점 총 130학점 이상을 이수
 3. 학칙이 정하는 외국어인증, 자기주도학습역량인증 및 봉사인증의 졸업자격인증을 받은 자
 4. 사회봉사 30시간을 수행하고 사회봉사학점 1학점을 이수한 자
 5. 졸업시험 합격자
- ② 기타 졸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